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 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 92. 4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건설부 고시에 의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등으로 변경된 지역에 건설부 고시일 이전부터 있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업지역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로 적용하여 그 이내의 토지를 별도 합산과세 하고 그 배율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하게 되므로써 감면조례 운영이 불필요 함으로 폐지함

2. 관계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194조의 14 제1항 제1호

조례 호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
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